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 록 번 호]20090100165

[최초 등록일]2009.04.03

[최종 등록일]2025.06.18

www.hongjjajang.com

hanbat0225@hanmail.net

홍짜장

정 보 공 개 서

(주)한발에프엔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한발에프엔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에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6길 12-1 (가락동, 한발빌딩)

Tel) 02-448-7720, Fax) 02-448-7735

가맹사업 담당부서 : 개발팀(02-448-7720)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한발 에프앤지	홍짜장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6길 12-1(가락동, 한발빌딩)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02.25	2009.02.25	이웅재	02-448-7720	02-448-7735
	법인등록번호	110111-4050194	사업자등록번호	215-87-2350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사용인 (임원)	이웅재	홍짜장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6길 12-1(가락동, 한발빌딩)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웅재	02-448-7720	02-448-773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합병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홍짜장의 가맹사업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홍짜장	
상 호	홍짜장 OO점	
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 제 41-0188139호
		등록번호 : 제 40-1334780호
광 고	해당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3,953,706	3,419,389	534,317	5,555,423	-8,231	-97,861
2023년	5,384,008	3,248,031	2,135,977	4,763,955	131,160	11,384
2024년	5,496,440	3,256,610	2,239,830	3,981,293	119,749	3,852

근거자료는 [첨부 1] 과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가맹사업 이외에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기 매출액 중 2023년과 2024년은 임대료 수입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였으며, 2022년은 해당 매출액을 분리하여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합산된 금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관 련	이용재	대표	2010.08 ~ 2022.11	(주)한발에프앤지 이사	관리업무
			2022.11 ~ 현재	(주)한발에프앤지 대표	회사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3	0	1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한말에프엔지	가맹사업 경영	2009.02 ~ 현재	홍짜장 (등록번호:20090100165)라는 중식사업 경영
			2018.01 ~ 현재	가락곰칼국수 (등록번호:20180017)라는 한식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홍짜장	서비스표 (43류)	2008.08.21 출원 2009.07.24 등록	41-2008-0022466 41-0188139	윤주철	2029.7.24
홍짜장	서비스표 (43류)	2017.07.21 출원 2018.02.27 등록	40-2017-0092402 40-1334780	윤주철	2028.2.27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홍짜장 시작일 : 2008.05.21
(직영점 시작일 : 2006.08.08)

2. 홍짜장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홍짜장	홍짜장	윤주철	2006.7.20~2009.2.2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7
(주)한발에프앤지	홍짜장	윤주철	2009.2.25~2022.10.31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6길 12-1
(주)한발에프앤지	홍짜장	이웅재	2022.11.01~현재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16길 12-1

가맹본부 상호의 [홍짜장] 은 개인사업자 운영 기간 임.

3. 홍짜장 업종

영업표지	업종	
홍짜장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중식	짜장, 짬뽕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홍짜장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바로 전 3년간 당사가 운영하는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94	94	0	69	69	0	58	58	0
서울	19	19	-	14	14	-	14	14	-
부산	2	2	-	1	1	-	1	1	-
대구	-	-	-	-	-	-	-	-	-
인천	5	5	-	2	2	-	3	3	-
광주	4	4	-	2	2	-	2	2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55	55	-	46	46	-	35	35	-
강원	3	3	-	2	2	-	2	2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2	2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3	3	-	1	1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홍짜장 가맹점 수

당사의 최근 3개년간 가맹점 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91	21	12	6	7	94
2023	94	5	18	12	3	69
2024	69	5	11	5	6	58

6. 홍짜장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홍짜장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한밭에프앤지	가락곰칼국수	20180017	한식	2/0	2/0	2/0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홍짜장]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전년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평균 매출액						산출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58	223,257	15,365	445,986	81,764	75,998	4,594	58개점 기준
서울	14	262,585	19,135	445,986	81,764	99,929	8,456	14개점 기준
부산	1	-	-	-	-	-	-	5곳미만
대구	-	-	-	-	-	-	-	
인천	3	-	-	-	-	-	-	5곳미만
광주	2	-	-	-	-	-	-	5곳미만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	-	-	-	-	-	
경기	35	207,924	14,706	387,985	32,830	75,998	4,594	35개점 기준
강원	2	-	-	-	-	-	-	5곳미만
충북	1	-	-	-	-	-	-	5곳미만

충남	-	-	-	-	-	-	-	
전북	-	-	-	-	-	-	-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제주	-	-	-	-	-	-	-	

①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의 포스 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특히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가맹점(5곳)의 매출액은 아래 환산식에 따라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 하였습니다.

* 연간 매출액 환산식 : 실제 발생한 매출액/영업일수 x 365(일)

② 직전 사업연도 말에 광역시도 기준 가맹사업자가 5곳미만인 경우는 지역별 연간평균 매출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③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홍짜장]의 바로 전 사업년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일)
2024	58개	2,107일

상기한 평균영업기간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실제 영업기간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의 명의변경(영업양수도)이 있는 경우 최초 오픈일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홍짜장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영업표지 2개(홍짜장, 가락곰 칼국수)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영업표지별로 광고비와 판촉비를 분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광고/판촉비용은 2개 브랜드에 함께 사용된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2,917	2,917	0	
광고	(비공개)	(비공개)	137	137	0	(비공개)
판촉	(비공개)	연중	2,780	2,780	0	(비공개)

※ 광고는 손익계산서상 광고선전비, 판촉은 판매촉진비 계정으로 구분 하였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가맹담당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74	02-449-1291

예치신청서는 [첨부 8]에 있습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홍짜장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 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홍짜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 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 불가 사유	비고
총계	8,800				
가맹비	5,500	가맹계약 체결일	가맹점 개점 이 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 처리 후 반환.	가맹점 개점을 위하여 소요되는 소멸성 비용	1.가맹점 운영권 부여의 대가 2.영업 know-how 및 자료 제공의 대가 3.개점지원(3일) 및 점점의 대가
교육비	3,300	가맹계약 체결일	교육 이 후 반환 안 됨. 단, 개점 전 해약 시 위약금과 상계 처리 후 반환.	교육에 따른 소멸성 비용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보증금	5,000	가맹계약 체결 일	본사와의 채무가 존재 : 식자재 비용, 로열티 등	가맹계약 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액

상기한 보증금은 가맹본부가 동의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물적 담보 제공 또는 일금 일천만원의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점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미 완료시 발생하는 금전적 문제 및 그 외 사항에 대해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보증보험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시 마다 보증보험도 갱신하여 가맹본부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점 개설 시 계약이행보증금은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5,000천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가맹계약 갱신 시 가맹계약 만료 전 12개월 매입대금의 규모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가맹계약 기간 중에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계약이행보증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3,800
가맹비	5,500
교육비	3,300
보증금	5,000(부가세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보증금을 물적담보 또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습니다.

4) 귀하(신규가입자)가 그 밖에 홍짜장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자의 경우 아래의 품목 중 당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품목이 있을 경우 이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8,650				12평 기준
인테리어	협력업체	19,800	1,650	계약금:계약 체결시 50% 중도금:시공 7일후 30% 잔금:공사감리일 20%	인테리어 공사 착공 전	
사인공사	당사	4,950	413		인테리어 공사 착공 전	전면간판(LED), 메뉴판, 배너, 로고스카시
주방기기/설비/버너	당사	18,700	1,558		인테리어 공사 착공 전	주방집기 비품, 식기류 일체 (점포상황에 따라 금액은 가변적)
의탁자	당사	2,200	183		인테리어 공사 착공 전	불박이소파, 테이블, 원목의자
초도물품	당사	3,000		개점 전 발주시 결제		소스 및 식자재·소모품 일체

- * 공사비 별도 항목 : 철거, 전기증설, 냉난방(전기포함), 가스, 소방, 파사드, 어닝, 천장 신설, 덕트 주방외 공사 등.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 표에 기재 된 비용 중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인테리어매뉴얼의 지적재산권 사용료로 평당 220,000원(부가세포함)을 가맹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지급완료 후 인테리어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공사

의 원활한 진행을 검수 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 * 간판을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시공을 하는 경우 지적재산권 사용료 1,100,000원(부가세포함)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간판 공사 외 개별 작업을 위한 본사 로고 요청시 로고사용료로 가맹본부에 55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서울·경기 이외의 지역에서 가맹점 개설 시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전 지급 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홍짜장 가맹점 입지선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지선정의 주체	입지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 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홍짜장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내역은 [첨부 2,3,4]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당사는 가맹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분할 납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가맹금을 가맹계약일에 예치기관에 예치하거나, 부득이 계약일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픈일 당일 현금 일시납으로 당사에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는 교육개시전에 납부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부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본 정보공개서 “V. 9. 광고 및 판촉 활동”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 불가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110	익월 5일	반환 안 됨	가맹점 운영권 부여	가맹점 운영권 지속과 브랜드 사용의 대가. 영업 지원 및 교육·관리의 대가.
정기교육	가맹본부	기본 교육은 무료이며 특수사항은 실비 청구.		반환 안 됨	실비 교육	점포별 개별 청구
특별교육	가맹본부	1일 132,000원, 교통비등 추가 비용 발생 할 수 있음. 개별청구		반환 안 됨	실비 교육	가맹점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해당 점포에서 조리 교육의 대가
재교육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개별청구		반환 안 됨	실비 교육	일정 자격미달 가맹점에 실시되는 교육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세부내용은 정보공개서 V.9. 광고 및 판촉활동 참조		반환 안 됨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 안 됨	
광고분담금	가맹본부			반환 안 됨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 안 됨	전국 또는 지역 단위로 시행되는 공동 광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가맹본부	가맹본부50%,가맹점사업자 측50% 분담원칙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15.5%	지급일 익 일 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			계약서에 명기된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기간 내 미지급 시 적용
POS	협력업체	월 38.5	매월25일	반환 안 됨	후불제	POS 사용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 변경 비용	가맹본부	영업표지가 부득이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교체비용은 가맹점사업자와 협의 후 결정		변경 작업 완료시 반환 안 됨	간판, 각종 SIGN	
점포환경개 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맹점사업자와 별도 계약에 의한 합의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절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바로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위생, 재고관리 등을 포함한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를 점검하고 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상품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당사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 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 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 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 (최초 가맹계약 2년 중)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초 가맹계약 2년 중).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최초 가맹계약 2년 중).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홍짜장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가맹본부]에 별도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귀하(양도인)는 가맹사업 운영에 따른 채무액이 있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나머지 채무액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은 최초가맹금 중 가맹비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교육비와 보증금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양수에 따른 제반행정비용(양수도 관리비)으로 일금 이백칠십오만원 (₩ 2,750,000)<부가세포함>을 부담하여야 하고, 가맹본부가 지정한 개점전 최초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인이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가맹비 전액과 교육비 및 보증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이행보증금은 물적담보제공 또는 보증보험 제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본 정보공개서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① 계약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매뉴얼은 필히 반환해야 하며, 그외 제반 자료는 가맹본부의 지시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철거 및 원상복구 확인 후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정산서를 발행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잔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철거,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부담합니다.
- ④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계약이행보증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후에도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지체기간 1일당 30만원(부가세 제외)의 손해배상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식자재)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10%~90%)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반품할 물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첨부 2,3,4,5]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거래형태 및 차액가맹금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공급가격의 상·하한

직전 사업연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주요품목의 공급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별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상기한 공급가격의 상·하한은 직전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된 품목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므로 현재 공급하는 품목 및 공급가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홍짜장 가맹점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명 칭	관 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연간거래총액)	비고
(주)한발유통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주)한발푸드서비스	계열사	(비공개)	(비공개)	
계			(비공개)	

상기한 경제적이익의 내용은 원부재료 품목 중 강제 및 권장 품목을 분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공급되는 원부재료가 모두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였으며, 경제적이익의 내용은 연간거래총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은 당사가 운영하는 2개브랜드(홍짜장, 가락곰칼국수)를 각각 분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홍짜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당사가 [홍짜장]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거래금액 (연간거래금액)	비고
-	-	-	-	-	-	2024년도기준
계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V.3.3) 상품/용역명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위반 : 구두경고 2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3회위반 : 서면시정요구 4회이상위반 :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 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 고객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위반:구두경고 2회위반:서면시정요구 3회위반:서면시정요구 4회이상위반:계약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로 부터 공급받은 상품·자재를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 및 외부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맹 계약상의 위반으로 상품·자재 공급이 중단된 가맹점에 상품·자재를 판매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첨부 7] 참조		문서	-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 그 취지를 통지 하고 당사와 사전협의의 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홍짜장'을 추가 설치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짜장, 짬뽕 등을 전문으로 하는 동일업종의 영업표시를 가진 가맹사업을 해당 영업지역에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짜장, 짬뽕을 주메뉴로 하는 짜장면 전문점	홍짜장	-

2) 영업지역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 방법
① 가맹본부는 영업지역을 구분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 별첨과 같이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한다. 이러한 입지선정의 최종의사 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한다. ② 영업지역은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최단 도보거리 1,000M, 배달지역은 최단 직선거리 1,000M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영업지역의 선택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영업 지역을 가맹계약서 별첨에 표시한다. ③ 전 항의 최단 '도보거리'라 함은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보행자의 보행방법에 의한 거리로 보행자가 걸어서 측정된 거리를 말하며, 특급 상권 등에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 및 지하보도, 건널목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 진다 ④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쇼핑몰, 놀이동산 및 다중 이용시설(공항, 터미널, 역사 등) 등의 특수시설은 별개의 영업지역으로 하며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상호 포함되지 않는 독립된 영업지역으로 한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한밭에프앤지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다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가맹본

부가 운영하는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홍짜장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당사는 가맹점 오프라인 판매외 다른 판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홍파장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점포개점일로부터 [2]년 입니다.
 자동 계약 갱신에 따른 계약 연장 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내용	진행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YES	NO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는가?	②	⑦	D-180 ~D-90
②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가?	④	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가?	⑤	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는가?	B	A	계약갱신 요구일 +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는가?	C	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인가?	B	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는가?	B	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는가?	E	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합의하여 계약조건 변경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계약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항
○ 가맹계약서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4항가호
○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3조4항나호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33조4항다호①목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33조4항다호②목
○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3조4항다호③목
○ 가맹점의 매출상승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점포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18조1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15]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해지사유	관련 계약조항
○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개업 시 교육을 가맹점사업자가 기한 내 받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2조3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교육 소집에 참가할 의무가 있으며, 3회 이상	18조7항

불참할 경우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의 가격 및 종류를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1회 위반 시 구두경고, 2 ~ 3회 위반 시 서면 시정 등의 절차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0조1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기납입경비(로열티)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1조1항가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품질관리기준을 3개월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1조1항나호
○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액이 계약이행보증금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31조1항다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협의 없이 점포 운영을 3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31조1항라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경영지도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경영지도의 결과 및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1조1항마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 약정한 판매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1조1항바호
○ 가맹점사업자가 노후화된 설비 일체에 대한 교체·보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31조1항사호
○ 가맹점사업자가(종업원 포함)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31조1항아호
○ 가맹점사업자가 부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31조1항자호
○ 가맹점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자재의 품질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필수품목 일부 및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31조1항차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본부가 정한 상품의 가격 및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메뉴를 판매하는 경우	31조1항카호
○ 가맹점사업자가 매출액 통지를 거부하거나 3회 이상 허위로 통지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 매장의 매출확인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포스 및 배달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31조1항타호
○ 가맹본부가 약정된 상품·자재의 공급, 경영지원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37조1항마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

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해지사유	관련계약조항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2항가호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7조2항나호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7조2항다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7조2항라호
개정삭제	37조2항마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7조2항바호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7조2항사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7조2항아호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7조2항자호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7조2항차호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계약시 법령의 변경, 가맹본부의 경영상황 변화 등으로 기존 가맹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재계약시 법령의 변경, 가맹본부의 경영상황 변화 등	33조 5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 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가맹점사업자가 동의치 않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동의 절차를 진행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 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양도 양수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개발팀 (02-448-7720)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양수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경우 잔여 계약기간 까지 가맹계약을 맺으며, 재계약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영업양수인은 양수도 업무에 대한 가맹본부의 제반행정비용(양수도 관리비) 및 개업 교육에 따른 교육비, 보증금 등 다른 비용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피상속인(가맹점사업자)의 가맹본부와의 채무잔액 전액을 지급한 후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 본부 승인 시 가능 - 상속인은 직계가족에 한함	모든 권리의무	상속인 가맹본부에 통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맹본부에 기간 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해지 처리	- 가맹비 면제 - 교육비 등 다른비용은 부담
대리행사	해당 없음			
업무위탁	해당 없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및 배달영업의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 국내 전지역에서 당사의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당사의 [홍짜장]에서 판매하는 동일한 업종의 영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해지를 포함) 후 2년 이내에 해당 영업지역 내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당사 영업표지 매장에서 당사의 영업표지 외의 타제품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짜장, 짬뽕, 볶음밥, 탕수육, 만두류 등을 판매하는 중국음식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개발팀 (02-448-7720)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홍짜장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1 : 00 ~ 21 : 00 (10시간)	주 6일 이상	문의 : 개발팀 (02-448-772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 없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첨부 8]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홍짜장과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광고와 제품광고, 판촉활동 등을 총괄하며 당사의 경영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광고 및 판촉에 사용되는 소재와 매체, 횟수, 시행일자 및 기간 등의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광고 및 판촉활동은 전체 가맹점의 매출활성화를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7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상기한 광고 및 판촉활동에 관하여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가 사전에 가맹계약과 별도로 광고 및 판촉활동의 명칭 및 실시기간, 광고 및 판촉의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여 그 약정에 따라 광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광고 및 판촉비용은 다음 표와 같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비	브랜드 광고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중 가맹점의 매출비중으로 산출함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비	상품판촉	공동 판촉 시 기획 비용은 본사 부담. 판촉물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그 밖의 판촉비용의 분담은 협의하여 결정. 개별청구		(주)한밭에프앤지가 소요비용을 산출하여 가맹점주에게 서면으로 제시	
개별 행사		해당없음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본사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조리방법, 운영방법,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 제22조 영업상 비밀 공개금지 및 제23조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위약금으로 금 오천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무단으로 사용 또는 방치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금 삼십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미 지급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용 발생시 가맹점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후에도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간판 등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지체기간 1일 금 삼십만원의 손해배상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해당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가맹사업자 보증보험증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 4) 가맹본부가 대여한 가맹점 운영 매뉴얼에 대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종료(해제 및 해지 포함)시에 가맹본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적재산권 손실에 따른 금 오십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가맹본부는 해당 금액을 계약이행보증금 또는 가맹사업자 보증보험증권에서 상계할 수 있다.

5)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 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에 의하여 가맹점 개점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을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교육 입소 전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가맹비 50% 및 교육비 반환
교육개시 이 후 및 개점이전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가맹비 30% 반환, 교육비 반환하지 않음
개점 이후	가맹금 0% 반환
계약 체결 후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발생비용 전액

* 가맹금은 가맹비와 교육비를 칭함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절차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5일 내외	정보공개서 IV.1.4) 참조
가맹점 개설상담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5일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가맹점 계약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일로부터 14일 이후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1일	
실측 및 인테리어	- 투자비 산출, 도면협의 - 공사일정 확인 및 공사 실시 - 개업 전 교육 시행 (5일) - 오픈 전 개점준비	28일	
개점	- 개점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의 상세내역은 [14]쪽의 '최초가맹금 이외에 가맹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다른 비용의 추정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 계약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잘 파악하는 상인간의 계약임을 천명하며, 그러한 전

제하에 계약조문은 해석됩니다.

- 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반법규와 조례, 건전한 상관례에 따르며 각 계약 특성상 변동되는 부분은 첨부계약서에 명시한다.
- 다.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에 앞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제 3자의 조정이나 중재를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조정 결정이나 중재판정에 따릅니다.
- 라.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경우 재판의 관할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측의 관할법원 또는 서울 동부 지방 법원으로 한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2의 규정에 의거 가맹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제외사유	비고
-점포의 시설,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 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 개선 : 40%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가능) 〈분할지급절차〉 -가맹점 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30%, 2차:1차 지급이로부터 60일 이내,	-점포환경개선일부 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총 부담액의 30%, 3차:2차 지급일로 부터 60일 이내, 총부담액의 40%)	
--	--	--	---	--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 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지원	가맹점 오픈 시 개점 정리 및 초기 점포운영 안정화를 위한 직원 파견	가맹점 신규개설 시(양도양수점 제외)	매장규모와 지역에 따라 별도협의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홍짜장] 가맹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 행사	가맹점 개점 시 탕수육(中)주문시+짜장면 무료	가맹점 신규개점 시(양도양수점 제외)	매장에 따라 별도 협의	짜장소스원가의 50% 본사 지원함 (식자재물품지원)	
매출 부진점 지원	매출부진 가맹점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비 지원		가맹계약기간	S.V 당 60만원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홍짜장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개업 전 교육	- 교육 일정 소개 -接客 교육 - POS 교육	이론교육	1일차	
	- 집기 및 기기 설명 - 메뉴별 재료 준비 - 메뉴별 조리 과정 견학, 실습	조리실습	2일차	
	- 메뉴 조리 초기 과정 - 주요 메뉴 반복 조리	조리실습	3일차	
	- 주요 메뉴 조리 숙달 과정 - 주방 운영 숙련 과정	조리실습	4일차	
	- 전 메뉴 조리 숙련 과정 - 홀, 주방 운영 숙련 과정	조리실습	5일차	
개업 후 교육	- 개업 매장 영업 중 조리·운영 실무 - 매장 전체 운영 과정 습득 - 현장 실무를 통한 매장 운영 능력 향상	현장실습	6~8일차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인원

귀하가 홍짜장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교육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교육인원
개업 전 교육	5일	3,300	2명
개업 후 교육	3일		점포 근무 인원
정기 교육	해당 없음		
수시 교육	해당 없음		

- 개업 전 교육 인원 1명 추가 시 550천원(부가세포함) 추가 비용 발생.

신규교육 종료 시 교육대상자들의 교육수료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교육 비용으로 1인 1일 기준 550천원(부가세포함)이 발생합니다.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하며, 홍짜장이 정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관리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 됩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는 (주)한밭에프앤지의 교육 소집에 참가할 의무가 있으며, 3회 이상 불참 시 계약서 제18조7항에 의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끝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개발팀(연락처 : 02-448-772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 1] 재무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첨부 2] 인테리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첨부 3] 주방설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첨부 4] 주방기기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첨부 5] 초도상품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첨부 6] 공급물품 및 공급가격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첨부 7] 판매 상품 및 용역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

상품 및 용역	권장가격	상품 및 용역	권장가격
짜장	7,500	쟁반짜장덮밥	10,000
짬뽕	8,500	짬뽕밥	9,000
소고기 짬뽕	11,000	홍 짬뽕밥	10,500
홍짜장	10,000	참쌀탕수육	20,000
홍 짬뽕	10,000	홍 탕수육	21,000
해물 쟁반짜장	10,000	간풍기	21,000
간짜장	9,500	군만두	6,000
볶음밥	9,000	돈까스토핑	3,500
소고기볶음밥	11,000	공기밥	1,000
홍 짜장덮밥	10,000	음료수	2,000

[첨부 8] 가맹금 예치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2. 18.>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8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 9] 가맹점 관리표 (Store Visit Report)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